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3.08.05.>, <5차 개정 2024.06.04.>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제15조(운영세칙)에 의거 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교내장학금

**제 2 조 (장학금의 종류)** 본교 학부 과정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명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3. 면학장학금
4. 디딤돌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리더십장학금
7. 체육특기장학금
8. 국가보훈장학금
9. 형제·자매장학금
10. 복지장학금
11. 공로장학금
12. 특별장학금
13. 외국인장학금
14. 나눔장학금
15. 사회봉사장학금
16. 동문장학금
17. 해외봉사장학금
18. 글로벌장학금
19. 경연·공모대회장학금
20. 기금장학금
21. 산업체장학금
22. 특성화고졸재직자장학금

#### 4-2-38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23. 다문화장학금
24. 다자녀장학금
25. 향상장학금
26. 융복합우수장학금
27. 창업장학금
28. 현장실습장학금
29. 교육혁신장학금
30. SW인재장학금
31. 진학장학금
32. 기타장학금

**제 3 조 (상명장학금)** 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시행한다. <개정 2024.06.04.>

**제 4 조 (성적우수장학금)** ① 성적우수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수석·차석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학과/학년별 수석, 차석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이상이고 학과/학년별 인원이 입학정원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입학정원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계약학과는 학과/학년별 인원이 장학금 지급 시 3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2. 다전공우수장학금: 다전공 이수자 중 이수학기별 상위 10%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단, 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외한다.

② 직전학기 취득학점 중 P/F과목(해외교환, 인턴, 현장실습 등)으로 9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성적우수장학금은 동일학기에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수혜대상자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한다.

**제 5 조 (면학장학금)** 면학장학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면학A: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2. 면학B: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제 6 조 (디딤돌장학금)** ① 품행이 방정하며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에서 소속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7 조 (근로장학금)** ① 교내 행정부서 및 기관, 학과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근로 장학금은 학기 및 방학에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다.

③ 근로 장학금은 근로종료 후 지급하며 근로기간 중도탈락 시 지급할 수 없다.

④ 근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리더십장학금)** ① 학생자치기구 또는 부속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자 중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지급한다.

② 리더십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체육특기장학금)** 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본교 체육부 운영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10 조 (국가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에서 교육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새터민 또는 새터민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 11 조 (형제·자매장학금)** ① 재적 중인 형제·자매학생 중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한다.

② 형제·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동시 재학 중에 학부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 (복지장학금)** ① 학교법인 상명학원이 임용한 본 대학교 교(임)직원(법인, 각급 부속학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되, 재직 중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한 자 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명예)퇴직한 자의 경우 당시 재적 중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 13 조 (공로장학금)** ①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특별장학금)** ① 사고, 재난 등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외국인장학금)** ① 외국인장학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본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2. 교환학생, 복수학위 과정 유학생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조 (나눔장학금)** ① 나눔장학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나눔(기초):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구간(분위)인 자
2. 나눔(장애): 장애(중증, 경증)판정을 받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3. 나눔(생활비): 탈북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연한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7 조 (사회봉사장학금)** ①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 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6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3회 이상 행사 참가실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16.>

②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동문장학금)** ① 서울 및 천안캠퍼스 학부를 졸업한 동문 또는 동문의 자녀를 대상으로 1개 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단, 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자녀는 제외한다.

②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동문자녀는 8개 학기 동안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제 19 조 (해외봉사장학금)** ① 해외봉사단에 선발되어 해외봉사에 참가하는 자에게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지급한다.

② 해외봉사 활동기간 중 중도 탈락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③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글로벌장학금)** ① 우리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해외탐방 프로그램(해외어학연수,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 등)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글로벌엘리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경연·공모대회 장학금)** ① 각종 경연·공모대회 우수자에게 수상 실적물을 첨부해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학생처장이 지급한다.

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2 조 (기금장학금)** ① 서울캠퍼스 기금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록장학금
2. 혜원장학금
3. 정채우장학금
4. 소망장학금
5. 김동호장학금

② 천안캠퍼스 기금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리장학금

③ 기금장학금은 해당기금 운영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제 23 조 (산업체장학금)**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24 조 (특성화고졸재직자장학금)** ①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재입학 포함)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수혜조건, 장학종류 및 금액은 매년 총장이 정하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고·시행한다.

**제 25 조 (다문화장학금)** ①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본교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제 26 조 (다자녀장학금)** ① 형제·자매 중 본교 재학 중인 셋째부터 지급한다.

- 제 27 조 (향상장학금)** ① 직전학기 성적보다 평점평균이 1.5이상 상승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비교학기 성적이 학점포기로 변경된 자와 학사경고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 28 조 (융복합우수장학금)** ① 융복합 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총액 내 지급하며 해당 부서장 또는 단과대학장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선발한다.
- 제 29 조 (창업장학금)** ① 창업 또는 창업 관련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선발한다.
- 제 30 조 (현장실습장학금)** ① 현장실습 대상자 중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생처장이 선발한다.
- 제 31 조 (교육혁신장학금)** ① 포상성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추천하고 학생처장이 선발하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 32 조 (SW인재장학금)** ① SW중심대학 사업 관련 장학금으로 SW인재(수석), SW인재(차석), SW인재(면학) 등이 있으며 학생처장이 지급한다.  
② SW중심대학 사업 기간 내에서 선발하고 해당 소속에만 지급한다.
- 제 33 조 (진학장학금)** ① 일반대학원 진학예정자 또는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예정)자 중 학과장이 선별하여 추천하며, 학생처장이 선발하여 등록금 총액 내 지급한다.
- 제 34 조 (기타장학금)** ① 교내 각 행정부서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처장의 승인으로 주관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5 조 (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4.06.04.>
- 제 36 조 (기타)** ① 장학생 선발 시 직전학기 성적이 해외교환, 인턴 등 현장실습 수업으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② 캠퍼스 및 학과 간 전과의 경우 편입생 기준을 적용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등록 후 휴학을 한 경우에만 이월이 되며 미등록 휴학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지급할 수 없다. 단 군휴학의 경우 예외로 지급한다.  
④ 기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②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경과조치) 사회봉사 장학금 실적 적용시점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3.12.16.]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 ②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경과조치) <별표> 장학금 지급기준에서 리더십(학생간부) 지급조건 직전학기 평점평균 2.5를 2.0으로 정정하여 제정 당시인 2023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4.02.02.]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적용한다.
- ②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경과조치) 근로장학금 변경 장학금액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4.04.24.]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4일부터 적용한다.
- ②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부칙신설 2024.06.04]